

예산총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2,000,000	17,460,000
일반회계	498,000,000	14,940,000
특별회계	84,000,000	2,520,000
공기업특별회계	29,000,000	87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000,000	48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000,000	390,000
기타특별회계	55,000,000	1,65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150,000	184,5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650,000	79,5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60,000	19,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200,000	66,000
주택사업특별회계	740,000	22,2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00,000	6,0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00,000	9,000
치수사업특별회계	4,250,000	127,5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700,000	111,000
대지보상특별회계	230,000	6,9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20,000	60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1,500,000	645,0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2,400,000	372,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04,75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